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88호 (2015.5.29.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33호, 2015.2.23.)고시를 아래와 정정·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 사항

-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”별지6”의 삭제 약제 중 정정

주성분코드	제품코드	제품명	업체명	상한금액 (단위 : 원)	정정내역	
					정정전 (前)	정정후 (後)
178701ACS	649402890	핀플연질캡슐 (이소트레티노인)	영일제약(주)	305	삭제	급여유지

붙임 : 정정고시문 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(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 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200 (2015.05.29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